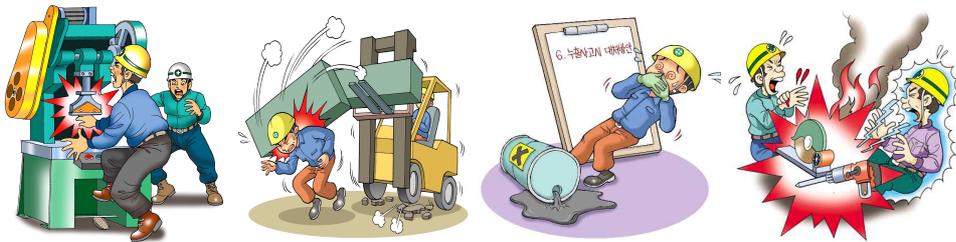


안전 02-0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사항

안전보건교육



노동부지정 안전관리대행전문기관

KTS 한국기술안전(주)

K T S K O R E A T E C H N O L O G Y S A F E T Y C O . L T D

산업안전·보건분야 주요서류

1. 공통분야

- ▶ 노동부관련 문서철(산업안전·보건분야 시정지시 및 조치결과 등)
- ▶ 근로자 명부, 취업규칙(10인 이상), 노사협의회(30인 이상)구성 및 회의록(1회/분기), 안전보건관리 규정(100인 이상) 【법제2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100인 이상) 및 회의록(1회/분기) 【법제19조】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경우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업종(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제1차 금속 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기준에는 노사협의회로 대체가 가능하였음)을 한 후 회의록 등 결과를 보존해야 함 【시행령 제25조】
- ▶ 안전·보건선임관련서류(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자 【법제15·16조】)
- ▶ 안전·보건교육 관련서류(정기2hr/월, 채용시8hr(동종경력4hr), 관리감독자16hr/年, 특별안전16hr) 【법제31조】
 - ☞ 특별안전교육은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규칙별표 8의2】
(1.고압실내작업, 2.아세틸렌용접장치또는가스집합용접장치사용, 3.밀폐된장소, ~ 38.석면해체·제거작업)
 - ☞ 성희롱예방 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 후 결과를 보존할 것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3년이내 2년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 ▶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전압 50V 이상), 중량물취급 작업을 할 경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해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 ▶ 도급사업안전·보건조치(협의체 구성, 총괄책임자지정, 2일에 1회 순회점검, 월1회 회의, 분기1회 노사합동점검)
- ▶ 산업재해기록 관련서류(산재요양급여신청서, 산업재해조사표, 재해재발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일체)
- ▶ 안전·보건일지 등 안전·보건관리자 직무수행관계 철(사업장)
- ▶ 안전·보건관리대행 시 대행 관련서류(대행계약서, 상태보고서 등)
- ▶ 연간안전·보건관리계획(매년 1월초에 작성하고 안전검사, 근로자안전교육 일정 포함)
- ▶ 위험설비 및 공정에 각종 표지판 부착(보안경착용지시표지판, 중량물 무게중심표지판, 안전수칙 등)

2. 산업안전 분야

- ▶ 사업장 Lay-Out 및 설비보유 현황표
- ▶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법정 방호장치 설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33조, 영 별표 7】
 - ☞ 프레스, 전단기, 아세틸렌 및 가스집합용접장치, 방폭용전기기계·기구, 교류아크용접기, 크레인, 승강기, 압력용기, 보일러, 롤러기, 연삭기, 목재가공용동근톱, 동력수동대패기,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로봇, 정전 및 활선작업용 기구, 추락 및 붕괴 등의 방호용 가설기자재.
- ▶ 유해·위험기계기구 검사관련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36조】
 - ☞ **안전검사2종(검사주기 2년)**: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2톤 이상), 리프트, 압력용기, 로울러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사출성형기
 - ☞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한 경우 설치 3년 되는 시기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합격표시를 부착
- ▶ 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서류(위생보호구 포함)

3. 산업보건 분야

- ▶ 근로자 일반, 특수,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서류(사후조치 포함) 【시행규칙 98조】
-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산업안전보건법 41조】 배치전 물질안전보건 교육실시 【시행규칙 92조의5】
- ▶ 화학물질에 대한 원·부자재 입출고 현황
- ▶ 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57조】
 - ☞ 근골격계부담작업(1~11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1차:2004.6 2차:2007.6 3차:2010.6)
 - 다만 신설사업장 1년이내, 근골질환요양결정·설비 도입·작업환경변경 시 지체없이 실시
 - 근골격계질환 연간 10인 이상(요양결정)발생 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 ▶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 【시행규칙 94조】
 - ☞ 작업환경측정결과 분진노출기준초과 시: 호흡기보호프로그램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05조】
 - ☞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노출기준초과 시: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512조】

안 전 교 육 실 시 명 단

순번	이름	서명	순번	이름	서명	순번	이름	서명
1			26			51		
2			27			52		
3			28			53		
4			29			54		
5			30			55		
6			31			56		
7			32			57		
8			33			58		
9			34			59		
10			35			60		
11			36			61		
12			37			62		
13			38			63		
14			39			64		
15			40			65		
16			41			66		
17			42			67		
18			43			68		
19			44			69		
20			45			70		
21			46			71		
22			47			72		
23			48			73		
24			49			74		
25			50			75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이해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 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
- 나.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 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

2. 산업안전보건법 연혁 및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과거 근로기준법 제6장에 안전과 보건으로 편입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532호 독립법으로 제정 공포된 법률로써 수차 제 개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6장 감독과 명령, 제6장의 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 지도사, 제7장(삭제),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및 부칙으로 본문 제98조 문과 법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10.12.30. 법률 9847호)**, 시행령(시행 2011.10.26 대통령령 23248호), 시행규칙(시행 2011.7.6. 고용노동부령 제30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1.7.6. 고용노동부령 제30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시행 2011.7.6. 고용노동부령 제30호)으로 되어 있다.

3. 법령의 체계

산업안전보건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 1개의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 1개의 대통령령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정하는 4개의 부령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에 관한규칙, 그리고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 고시·예규·훈령 등으로 되어 있다.

효력순위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순서로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하위규정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적 근거의 확보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법(法)에서 위임된 사항 즉 법 시행 대상범위 종류 등을 설정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일반·안전·보건·취업 제한 등 4가지로 구분한 내용으로 구성

라. 고시·예규·훈령

- 고시 : 각종 검사·검정 등에 필요한 일반적, 객관적 사항을 널리 알려져 활용할 수 있는 표준적·수치적인 내용을 규정
- 예규 : 행정 절차적 사항의 내용을 조문형식으로 규정
-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훈시·지침 등을 시달할 때 그 내용을 조문 형식으로 규정



마. 지침, 표준

- 지침 : 고시의 범주에 포함된 각종 기술상의 매뉴얼을 하나의 규범형식으로 작성
(예) 동력 프레스 기계·기구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
- 표준 : 작업장내 유해환경요소의 제거를 위한 기술상 모델인 작업환경표준, 기타

4. 산업안전보건법 특성

가. 복잡성, 다양성

사업장의 기계·설비의 다양성, 유해물질 사용량의 급증, 작업공정 및 기계장치의 복잡성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는 날이 갈수록 더욱 복잡화·대형화·다양화 되어 가고 있다.

나. 규제성

정부의 책무, 근로자의 의무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기계·기구·설비 및 원재료·유해물질 등을 유지, 관리하는 총체적 책임을 갖는 사업주에게 보다 많은 규제성을 두고 있다.

다. 강행성·강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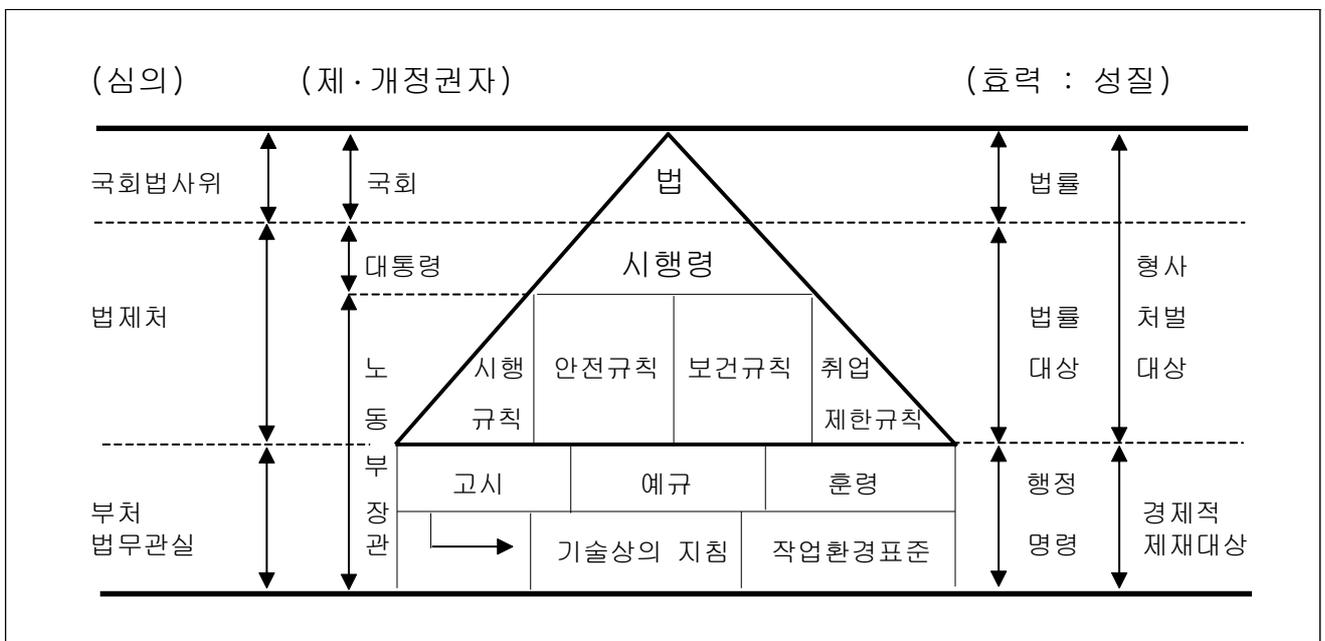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율성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강행을 요구하고 또한 당사자 의사 여부를 불문하고 상시 적용되도록 강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라. 기술성

산업현장의 기계·기구·설비 및 원재료·유해물질 등의 물적 요소에 대한 유해 혹은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성이 필요하다.



5. 산업안전보건법령 계층의 구조도



제2장 주요 산업안전·보건 법령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 장애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법 제6조 【근로자의 의무】

[전문개정 2009.2.6]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그 밖에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산업재해방지 조치

1. 안전·보건수칙 및 표준작업방법을 준수
2. 작업장 정리정돈, 유해·위험장소의 출입금지
3.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
4.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시 의견 제시
5. 안전·보건관계자의 지도조언에 따름
6. 안전·보건교육에 참석, 보호구 착용 철저
7. 유해물질 취급 시 사용·조치요령 준수
8. 개인위생 청결유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실시
9. 방호조치의 임의 해체금지 및 작업 신호 준수, 사업주가 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준수



법 제10조 【산업재해발생 기록 및 보고 등】

[전문개정 2009.2.6]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 방지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차300만원, 2차600만원, 3차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 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0, 2010.6.4> [전문개정 2009.2.6]

시행규칙 제2조 【정의】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안전·보건표지"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7]

제11조 【법령 요지의 게시 등】

-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 1차50만원, 2차250만원, 3차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1차30만원, 2차150만원, 3차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2.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3. 제2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4. 제41조에 규정된 사항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7.12>
- ② 사업주는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의2 【산업재해기록 등】

[전문개정 2009.8.7]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4.재해 재발방지 계획)

법 제12조 【안전표지의 부착 등】 ☞ 1차3만원, 2차15만원, 3차30만원 이하의 과태료(1개소당)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 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1차300만원, 2차400만원, 3차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4장에 따른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2.6]
-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한다.

시행령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 ①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0.7.12>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뒤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규교육을 6시간 이상(집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개정 2010.7.12 2010.11.18>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대행기관일 경우 대행요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1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영 제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0.7.12>

1.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2. 영 별표 3 제1호 부터 제20호 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1. 토사석광업	2.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3.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4.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5. 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6.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8.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9.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0. 1차금속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제조업	12.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3.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	14. 전기장비제조업	15. 의료, 정밀, 광학기기제조업
16.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17.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8. 가구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19. 금속및비금속원료재생업	20. 자동차종합수리업	

시행규칙 제14조 【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 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등" 이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다시 임명 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안전관리 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 후 수탁 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전문개정 2009.8.7]

법 제14조 【관리감독자】 ☞ 1차500만원, 2차500만원, 3차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2.6]

법 제14조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7.30]

-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관리감독자가 법제 3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 3. 그 밖에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법 제15조 【안전관리자 등】

☞ 1차500만원, 2차500만원, 3차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① 사업주는 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은 시행규칙 제12조 영별표3에 운수업과 통신업을 추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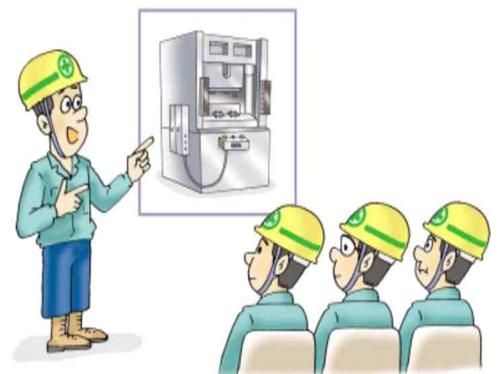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전문개정 2009.7.30]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4조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법35조에 따른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7.30]

법 제16조 【보건관리자 등】

☞ 1차500만원, 2차500만원, 3차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령 제17조 【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
4.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5.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
6. 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8.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에 한한다)
12.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3.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7.30]



법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1차300만원, 2차400만원, 3차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령 제2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

[전문개정 2009.7.30]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명(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명)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당 해당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1. 제1차 금속산업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토사석 광업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7.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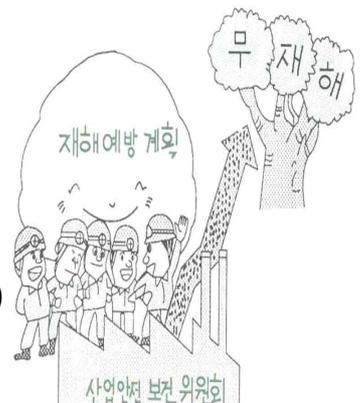
☞ 1차50만원, 2차250만원, 3차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 사항
-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1차50만원, 2차250만원, 3차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⑥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전문개정 2009.7.30]

-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경우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 업종으로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는 제외)
 3.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제1차 금속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시행령 제25조의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전문개정 2009.7.30]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되, 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해당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독관이 근로자 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5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 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 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시행령 제25조의3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7.30]

시행령 제25조의4 【회의 등】 ☞ 1차50만원, 2차250만원, 3차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당)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법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1차150만원, 2차300만원, 3차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 두고(☞1차30만원, 2차120만원, 3차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6의2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안전보건규정작성 시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8.7]

법 제23조 【안전 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법 제24조 【보건 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사업을 할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 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직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법 제25조 【근로자의 준수사항】

☞ 1차5만원, 2차10만원, 3차15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는 제23조와 제24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법 제26조 【작업중지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 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 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위험물 등의 폭발이나 화재의 발생
- ▶ 굴착작업 시 설비에 고장이 생겼거나 물이 들어올 우려가 있을 때
- ▶ 터널 등의 건설작업 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 ▶ 통풍이 잘 안되는 옥내작업장에서 유기용제업무 취급,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을 때 등



법 제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줄 때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보건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법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시행규칙 제2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전문개정 2009.8.7]

①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과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사항의 주지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법 제29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구축물·공작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선박내 또는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장소
10. 보건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13. 보건규칙 제166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장소
14.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시행규칙 제30조의2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1. 도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2. 수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월에 1회 이상
2. 토사석 광업 및 제조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제외한다) : 분기별 1회 이상

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1차5만원, 2차10만원, 3차2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사업 내 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과태료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미 실시 1회당 1차5만원, 2차10만원, 3차20만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판매업무 및 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작업 외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의 교육	일용 근로자		1시간 이상	미 실시 1명당 1차5만원, 2차10만원, 3차15만원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 근로자		1시간 이상	"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		2시간 이상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법 제32조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1차5만원, 2차20만원, 3차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시행규칙 제3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 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직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08.9.18>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24시간 이상

법 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험기계·기구명	방호장치
프레스, 전단기	방호장치
아세틸렌 및 가스집합용접장치	안전기(수봉식, 건식)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크레인, 승강기, 곤도라, 리프트	과부하방지장치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호 장치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 및 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	날의 접촉 예방장치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방호울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추락 및 붕괴등의 방호용 가설 기자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계, 파이프, 서포트 등

법 제34조 【안전인증】 1차100만원, 2차500만원, 3차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2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②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는 자는 의무안전 인증 대상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6.4>

※안전인증:8종(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법 제35조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자율안전확인신고: 3종(원심기, 공기압축기, 곤돌라)

법 제36조 【안전검사】

-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1차20만원, 2차60만원, 3차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대당)
- ②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1차5만원, 2차25만원, 3차50만원 이하의 과태료(1대당)

시행령 제28조의3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번호	기계기구	적 용 범 위
1	프레스	o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 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 (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2	전단기	나.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3	크레인	o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호이스트 포함) 다만, 이동식크레인은 제외
4	리프트	o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삭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 는 적용 다만, 간이리프트, 최하층 바닥면으로부터 최상층 바닥면까지의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5	압력용기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 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cm²)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 나. (삭 제) <2009.12.23> 다. 용기의 검사범위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검사주기(매년 1회이상)마다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중 해당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정 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압력용기 작동 점검일지(다음카페: cafe.daum.net/oh6)

6	곤돌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7	국소 배기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 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디아니시딘과 그 염 ②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③베릴륨 ④벤조트리클로리드 ⑤비소 및 그 무기 화합물 ⑥석면 ⑦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⑧염화비닐 ⑨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⑩크롬광 ⑪크롬산 아연 ⑫황화니켈 ⑬휘발성 콜타르피치 ⑭2-브로모프로판 ⑮6가크롬 화합물 ⑯납 및 그 무기화합물 ⑰노말렉산 ⑱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⑲디메틸포름아미드 ⑳벤젠 ㉑이황화탄소 ㉒카드뮴 및 그 화합물 ㉓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㉔트리클로로에틸렌 ㉕포름알데히드 ㉖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㉗곡물보진 ㉘망간 ㉙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㉚무수프탈산 ㉛브롬화메틸 ㉜수은 ㉝스티렌 ㉞시클로헥산은 ㉟아닐린 ㊱아세토니트릴 ㊲아연(산화아연) ㊳아크릴로니트릴 ㊴아크릴아미드 ㊵알루미늄 ㊶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㊷용접흄 ㊸유리규산 ㊹코발트 ㊺크롬 ㊻탈크(활석) ㊼톨루엔 ㊽황산알루미늄 ㊾황화수소 ○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8	원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심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회전체의 회전운동에너지가 750J 이하인 것 나. 최고 원주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원심기 다. 원자력에너지 제품 공정에만 사용되는 원심기 라. 자동조작설비로 연속공정과정에 사용되는 원심기 마. 화학설비에 해당되는 원심기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단위공정[기계기구 및 설비를 중심으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중간제품)의 생산 이송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괄공정을 이루는 설비] 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안전규칙 별표 3의3 기준량 이상인 경우(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 등은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만,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압력용기는 제외 가.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다.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 되는 설비 라.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마.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 되는 설비 바. 가열로 또는 가열기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설비는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 등을 포함하여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 또는 전열의 경우 정격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설비 등은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열원을 이용하여 건조물에 포함되는 수분, 용제를 건조하는 설비 나. 열원을 이용하여 도로,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개선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설비 다. 열원을 이용하여 가연성 분말 등을 만들어 건조하는 설비로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11	롤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는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12	사출 성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클램핑 장치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사출성형기 나. 반응형 사출성형기 다.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라.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마.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인 사출성형기

시행규칙 제73조의3 【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 방법】

[전문개정 2009.8.7]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 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2. 그 밖의 유해·위험기계등: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 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 1차50만원, 2차250만원, 3차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미리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10.6.4>

-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1차30만원, 2차150만원, 3차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하고, 근로자를 교육(☞1차5만원, 2차10만원, 3차15만원 이하의 과태료/1명당)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1차300만원, 2차300만원, 3차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1차1000만원, 2차1000만원, 3차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행규칙 제9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은 사항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리화학적 특성
2. 독성에 관한 정보
3. 폭발화재 시의 대처 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전문개정 2009.8.7]



시행규칙 제92조의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요령】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9.8.7]

시행규칙 제92조의4 【경고표시】

[전문개정 2009.8.7]

- ① 사업주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단위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화학물질 함유제제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해당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위험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CAS NO. 1310-73-2									
신호어 : 위험									
유해·위험 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 특정 표적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예방조치 문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예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전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td> </tr> <tr> <td style="width: 30%;">대응</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켰다면 입을 씻어내시고 토하게 하려 하지 마시오.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닿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고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 •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고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 </td> </tr> <tr> <td style="width: 30%;">저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봉하여 저장하십시오 </td> </tr> <tr> <td style="width: 30%;">폐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십시오 </td> </tr> </table>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전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켰다면 입을 씻어내시고 토하게 하려 하지 마시오.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닿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고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 •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고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 	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봉하여 저장하십시오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십시오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전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켰다면 입을 씻어내시고 토하게 하려 하지 마시오.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닿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고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 •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고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 								
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봉하여 저장하십시오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십시오 								
공급자 정보 : ○○안전(주), 대전광역시 중구 삼성동 279 ☎ 042-585-0000									

시행규칙 제92조의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 등】 [전문개정 2009.8.7]

-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할 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면 본문에 따른 교육을 한 것으로 한다.
-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별표8의2와 같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2조의7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전문개정 2009.8.7]

-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는 화재·폭발시 방재요령, 취급·저장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 게시할 수 있다

법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미 실시 1인당 1차5만원, 2차20만원, 3차50만원, 일부누락 1인당 1차3만원, 2차12만원, 3차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3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전문개정 2009.8.7]

법 제42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 이라 함은 별표 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건규칙 제166조제8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 보건규칙 제166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3. 보건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시행규칙 제93조의4 【작업환경측정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1. 별표 11의4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11의4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09.8.7]

시행규칙 제94조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전문개정 2009.8.7]

-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3조 【건강진단】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미실시 1인당 1차5만원, 2차10만원, 3차15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 시켜야 한다.

시행규칙 제98조 【근로자 건강진단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건강진단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 사무직 종사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대하여 2년에 1회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법 제43조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 화학적 인자(유기화합물 108종, 금속류18종, 산 및 알칼리류8종, 가스상태 물질유14종,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물질13종) 분진6종, 물리적 인자8종
 -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1	N, 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 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 1, 2, 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먼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3. 배치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4. 수시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작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5. 임시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 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45조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2010.6.4>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6]

법 제46조 【근로시간 연장제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9.2.6]

시행령 제32조의8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제한 등】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 또는 잠수작업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서 잠함·잠수작업시간, 가압·감압방법 등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작업에서 법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유해·위험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절한 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 개선의 통화를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갯내에서 행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흙·돌·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7.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연·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법 제64조 【서류의 보존】

☞ 1차30만원, 2차150만원, 3차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발생기록, 제13조·15조·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직의 선임에 관한 서류,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서류, 제4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및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제19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결과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법 제66조의2 【벌칙】

제23조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2.6]

법 제6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9.2.6]

법 제67조의2 【벌칙】

<개정 2011.7.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 제46조,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의제2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2. 제34조의4제2항, 제38조제4항, 제38조의2제3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제8항 또는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2.1.26>

법 제68조 【벌칙】

<개정 2011.7.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 제29조제3항,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3.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일 2012.1.26>

법 제69조 【벌칙】

<개정 2011.7.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6항, 제35조제1항, 제35조의2제2항·제3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5항 또는 제4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일 2012.1.26>

법 제70조 【벌칙】

제2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2.1.26>

법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시행령 제48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

- ①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3과 같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13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개정 2011.4.4>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 행위자가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 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등 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재해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상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부과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법 제2조제7호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나. 법 제49조의2제1항의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 :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3.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차 위반시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규모별 감경기준 적용 시 최종 부과액이 적어 필요성이 저하되므로 적용을 배제함

- 가. 상시 근로자 100명(40억원) 이상 300명(120억원) 미만: 100분의 90
- 나. 상시 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80
- 다. 상시 근로자 10명 (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70
- 라.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60

※ 2011.5.19일 부터 79개 모든 항목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1.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 재해를 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 제1호	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범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	600	1,000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	1,000	1,000
2.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1호	가. 전부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	250	500
		나.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	150	300
3. 법 제11조제2항 을 위반하여 근로자 대표 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호	가.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다.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제5호는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마.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바. 법 제41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사.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4. 법 제12조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개소 당)	3	15	30
5.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300	400	500
6.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 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 상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500	500	500
7.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8.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를 늘리거나 다시 임명하도록 한 명령 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4호	가. 안전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나. 보건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9.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 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300	400	500
10.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300	400	500
11.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 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	250	500

12.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 안전 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가.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 하지 않은 경우 나.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 하지 않은 경우	50 10	250 20	500 30
13.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1호	가. 작성하지 않은 경우 나.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150 30	300 120	500 300
14.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50	250	500
15.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조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2호		5	10	15
16.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수급인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의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 5	250 10	500 15
17. 법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가.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10	250 20	500 30
18.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가.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나. 50%이상 100%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다.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19. 법 제3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가.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0	1,000	1,000
20. 법 제3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가. 작성하지 않은 경우 나. 공사 종료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100	500 200	1,000 300
21. 법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100	200	300
22.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가.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회당) 나.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회당)	5 5	10 10	20 20
23.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24.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25.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법 제72조 제5항제4호	가.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나.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5	20 20	30 30
26.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00	500	1,000

27. 법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 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50	250	500
28.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20	60	100
29.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5	25	50
30.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 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31. 법 제3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300	600	1,000
32.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제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1호		1,500	3,000	5,000
33. 법 제3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50	300	500
34. 법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5호		100	200	300
35.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50	300	500
36.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6호		100	200	300
37. 법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하는 데도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제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2호		1,500	3,000	5,000
38.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근로감독관이 측정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1,000	1,000	1,000
39.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7호		30	150	300
40.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2호		30	150	300
41.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게시 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1호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50	250	500
		나. 자사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50	250	500
		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30	150	300
42.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고 표시를 하지 않거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8호	가.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43.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물질 안전 보건자료를 양도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8호		300	300	300
44. 법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명령 또는 취급 주의사항 등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3호	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나.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45. 법 제41조제8항을 위반하여 물질 안전보건 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500	500	500
46.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4호	가.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5	20	50
		나. 측정대상 유해인자의 일부를 누락하고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3	12	30
47.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법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할 때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임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9호 및 제72조 제4항제5호	가.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120	300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임회시키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48.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50	250	500
49. 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5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1명당	5	10	15
50. 법 제4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임회 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5호		500	500	500
51. 근로자가 법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2호		5	10	15
52.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9호	가.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100	200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53.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 안전 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 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50	250	500
54. 법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2호		300	300	300
55. 법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할 때 사업주 및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2호	가.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나.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5	10	15
56.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300	400	500
57.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000	1,000	1,000
58.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갖춘자의 의견을 듣지않고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0호		30	150	300
59.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1호		30	150	300

60.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한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3호		1,000	1,000	1,000
61.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 진단 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 대표가 요구한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2항	가.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	750	1,500
		나.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62. 법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100	250	500
63. 법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50	250	500
64. 법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1호		30	150	300
65. 법 제4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가. 사업주(내용위반 1건당)	10	20	30
		나. 근로자(내용위반 1건당)	5	10	15
66. 법 제5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3호	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명령 위반	500	750	1,000
		나.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명령 위반	1,000	1,000	1,000
67.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50	250	500
68.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가.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나.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10	15
69.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6호		1,000	1,000	1,000
70.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 방해, 기피 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2호	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	200	300
		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300	300	300
71.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6호	가.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0	500	500
72. 법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7호		50	250	500
73. 법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준수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4호		5	10	15
74. 법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사가 등록 없이 직무를 시작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50	300	500
76.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3호	각 서류의 종류별	30	150	300
77.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 측정기관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3호		30	150	300
78.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3호		30	150	300
79. 법 제64조제4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서류를 보존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3호		30	150	300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307호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1
석탄광업	354	수제품 제조업	17
금속 및 비금속광업	161	기타 제조업	33
채 석 업	246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석회석광업	76	4. 건설업	37
기타 광업	72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 및 석도운수업	9
식품제조업	22	여객자동차운수업	20
담배제조업	9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0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4	화물자동차운수업	73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5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2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89	항공운수업	7
목재제품 제조업	51	운수관련 서비스업	9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6	창 고 업	16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10	통 신 업	12
인쇄업	16	6. 임업	72
화학제품 제조업	18	7. 어업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어업	314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27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서비스업	15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85	8. 농업	29
고무제품 제조업	24	9. 기타의 사업	
유리 제조업	20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0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3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2
시멘트 제조업	26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6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제련업	12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1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도금업	23	전문기술서비스업	6
기계기구 제조업	2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교육서비스업	8
전자제품 제조업	7	0. 금융 및 보험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31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20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1	* 해외파견자: 17/1000	

※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자료실에 게재

한국기술안전(주) 사업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장 안전점검 조치 등 사업주와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근로자등에 대한 **재해예방에 관한 교육, 훈련 지도·조언 업무 등** 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선임위반시:500만원이하과태료)

정부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직접 유자격 안전관리자 채용과 선임의 어려움 및 경영상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업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노동부지정 안전관리대행전문기관**으로 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노동부지정 안전관리대행전문기관인 **한국기술안전(주)**에서는 안전관리업무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오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사업장방문 안전점검 실시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상, 보건상 조치
에 대한 개선대책 제시와 기술지도로 위험요인 제거				
안전·보건교육 훈련실시	☞	신규채용자·일반근로자	및	기타 회사와 협의 교육
을 통한 재해예방 지식·기능·태도를 개선 안전작업유도				
안전기술자료 무료제공	☞	매월안전교육교재제공	및	각종 안전기술자료 제공
을 통한 위험관리 모델기법보급과 저비용·고효율 산재 예방기법 보급				
각종 홍보자료 무료 보급	☞	정부정책자료 보급	및	안전포스터·표어 보급
을 통한 노동부 최신정책과 무재해운동, CLEAN사업 등 우수안전장치, 보호장구 등 정보제공				
산재예방계획·재해처리지원	☞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및	산재원인분석·대책수립
을 통한 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원·작업환경개선업무지원 등 재해원인분석 대책조치로 근로자와 회사재산 보호				
노동행정 등 대관업무 지원	☞	노동부 안전공단 업무	및	인사·노무·소송관련등 조력
노동행정 관계서류 작성조력, 안전·보건관계 시설자금 무료지원·장기저리 융자안내신청외 산업재해관련 민·사상 업무 상담, 지도, 조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노동부 지정 안전관리대행기관

 **한국기술안전(주)**

K T S K O R E A T E C H N O L O G Y S A F E T Y C O . L T D

(상담안내 : 전화 02-453-9461~2. 453-9466 / FAX 02-453-9480)